

제321회 임시회

2013. 6. 12(수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6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4일

3. 제안이유

가.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반영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심의사항 (안 제6조)

-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술심의, 대형공사·특정공사 입찰 방법심의, 일괄·대안 입찰공사 입찰안내서 및 설계심의 등 세부사항 명시

- 도, 시·군 시행 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

나. 소위원회·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- 일괄·대안 입찰공사 설계심의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사항

다.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)

- 심의위원으로서 윤리와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위·부패 등 결격사유 명시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2013. 2. 20)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,
- 조례 시행의 명확한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기존에 준용되었던 국토교통부 훈령 「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」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,
- 현행 조례를 간결화,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
-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임.
- 입법예고('13. 5. 2. ~ 5. 21.)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

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
- 조문의 내용은 '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가. 「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제출되었으므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